국내외 개인정보 보호법제 현황 및 쟁점

임규철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I. 들어가는 말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국내에서 옥션, 하나로텔레콤, GS칼텍스, 신세계닷컴, 현대캐피탈, 네이트, 엡손, 넥슨, EBS, KT 등 인터넷 사업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사례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2011년 9월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일반법 기능을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2012년 8월 18일부터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법령, 고시 등의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금지되어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된 상태이다.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지금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 관련 법제들이 제정 및 개정 등을 통해 정비되고 있다. 유럽열강에 뒤쳐졌던 산업사회에서의 아픔을 정보사회에서까지 되풀이 할 수 없다는 경각심으로, 개인정보는 보호보다 활용에 중점을 두는 사회적 분위기가 팽배했다. 산업사회의 압축 성장을 정보사회에서도 반복하기 위해서는 활용이 더 필요하다는 논리가 학계, 관료, 정치 영역에서 대세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주된 움직임은 유럽연합 및 일본을 필두로 한 외부의 영향 때문인지는 몰라도 보호 및 활용의 균형을 잡기 위해 보호 쪽으로 방향을 잡아나가고 있다. 2012년 1월 25일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기업의 비용을 줄이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유럽의회 제출안은 그런 배경과 함께 등장했다.[1)]

이 글은 국내외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현황과 쟁점을 중심으로 기술한 글이다. 그 현황과 쟁점들이 언론보도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도 같이 알아보고자 한다.

글 순서로는 먼저 정보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개인정보의 활용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1) 통과되면 각 회원국에서의 변형절차 없이 유럽회원국에게 그대로 법률로서 확정되며 그 규범의 추진배경, 예상 파급효과, 규정 초안 등은 http://ec.europa.eu/justice/newsroom/data-protection/news/120125_en.htm 참조.

보호 및 활용의 균형추 역할을 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 개인정보의 개념과 상이한 그 가치 및 개인정보 관련 법제의 세계적인 흐름 및 법제를 개괄하고자 한다. 핵심 법률인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중심으로 그 주요 내용을 알아보면서 언론보도와의 관련성도 동시에 알아보고자 한다.

Ⅱ. 정보사회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개인정보자기통제권)

정보사회(informationsgesellschaft)는 말 그대로 '정보'가 중심이 되는 사회이다. 이 정보에는 '개인정보'가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봉건 및 산업사회 역시 정보의 존재가 있었지만 그 때와 달리 해당 정보의 순환은 빛의 속도와 맞먹을 정도로 빠르다. 마우스 한 번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유통이 되는 것이 당연한 시대에 살고 있다. 동시에 유통된 정보는 사실상 시간의 구애 없이 무제한 저장도 가능한 시대이다. 'cloud 및 ever note 기술'은 이를 더 촉진시키고 있다.

봉건 및 산업사회도 군주 또는 국가나 지배 권력층은 자기 지배 영역의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통제 및 행정목적 달성의 수월성을 달성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였고 이는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다만 그 정보는 불완전성 및 불연속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 오남용의 범위는 제한적이었다.

정보사회에서도 해당 목적으로의 공공 및 민간 권력층의 개인정보의 활용이 빈번하게 이뤄지곤 한다. 최근 행정부나 일부 대기업의 민간인 및 근로자 불법사찰이나 행정안전부 또는 지식경제부 중심의 공공정보의 활용 확대 정책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다. 그 활용이 되는 정보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성을 가지고 있어 예측 가능성이 높다. 잘못 기록된 개인정보의 오남용에 대한 피해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도 정보사회의 이전과 구별되는 특징 중의 하나이다.

정보사회에서의 개인정보의 활용(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 오남용이라는 활용의 위험이 있다고 하여 그 활용을 접으라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하여 자동차나 비행기의 활용을 그만둘 수 없는 것처럼 사회 구성원들의 위험회피가 불가능하다면 그 활용을 멈춰야겠지만, 위험회피가 가능하다면 그 위험을 수렴하고서 가야하는 것이 위험사회인 정보사회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의 바람직한 태도라고 생각한다.

정보사회에서의 그 적정한 위험회피를 위한 노력은 개인정보의 보호 및 활용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물이 헌법상 기본권 중 하나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다.[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대한 정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느 범위 내에서 타인에게 수집 및 활용되게 할 수 있는 지를 해당 개인(정보주체)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3)] 동 기본권은 1983년 독일의 '인구조사 판결'[4)]에서 국가의 필수 불가결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과다한 개인정보의 요구 및 특별한 보호(보안)조치 없는 상태에서의 개인정보의 요구는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는 판례에 의하여 창설된 기본권이다.

국내에서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지문날인' 헌법소원 등 여러 판결 및 결정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있다. 2012년 8월 23일의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된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의 헌법재판관 전원일치의 위헌 결정[5)]에서도 개인정보

2) 이인호, "디지털 시대의 정보법 질서와 정보기본권", 중앙법학논문집, 제26집 제2호, 2002, 223쪽.
3) 헌재 2005.5.26. 선고 99헌마513 · 2004헌마190(병합) 결정.
4) BVerfGE 65,1(49).
5) 헌재 2012.8.23. 선고 2010헌마47 결정(위헌).

자기결정권을 적극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적극적인 보장은 사회 구성원들의 민주주의 의식의 강도와 정비례 관계를 띠고 있다. 완전한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투명인간은 스스로의 자기 검열을 강화하면서 사회에서 설정된 의제에 소극적인 역할을 불러 오기에 민주주의 위기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에 의하여 알고 있다. 이런 흐름과 함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정책을 논함에 있어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 또는 정책의 효율성만으로 주된 기준을 잡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법익과 그 한계의 설정은 강한 유동성을 띠고 있다. 동 기본권은 판례로 형성이 되고 있고, 크게 보자면 유동적인 정보통신의 발달과 궤적을 같이 하고 있으므로 법이 요구하고 있는 명확성을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범위확정은 '전교조 실명공개 사건'[6]처럼 외국과의 비교법 연구가 큰 중요성을 띠고 있다.[7]

Ⅲ. 개인정보의 개념과 가치

1. 개인정보의 개념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주체)에 관한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 '개인의'가 아닌 '개인에 관한'으로 정의한 것은 공공영역에서의 개인정보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인에 대한 인식을 가능하게 만드는 '단편 정보'(모자이크 정보) 역시 보호되는 개인정보에 속한다. 정보통신 발달로 인해 단편 정보의 보호의 필요성 및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cookie' 정보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런 입법태도는 유럽연합 및 OECD 공동의 입장이다.

정보주체에 대한 '단편 정보를 포함해서 식별가능성(식별성 포함)이 있는 정보'만 그 보호법익에 포함된다. 그 식별가능성의 기준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동일한 궤적을 형성하고 있다. 그런 상황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정보사회에서 더 이상 중요하지 않는 사소한 정보는 없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그 기준은 개인정보처리자(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일반인의 기준에서 찾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각국의 그 기준을 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공통이지만 일반인을 그 기준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구별의 실익은 익명 또는 가명 정보, 암호화된 정보도 개인정보의 보호범위에 포함시킬 것인가의 판단에 있다. 그런 정보들은 식별성이 없거나 약하기 때문에 보호법익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일리는 있으나, 그런 정보들의 해체는 시간 및 비용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보호법익에 포함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는 현실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과실 및 손해배상 인정 유무와 직결되어 있다. 제외된다고 본다면 익명, 가명 또는 암호화된 정보 처리를 했지만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도의적인 책임 발생은 몰라도, 법적인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다.

반면에 포함된다고 본다면 법적인 책임을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부담을 시키되 '최신의 기술(State of the art)' 등의 사용 유무에 따라 손해배상의 감면을 정하는 정책으로 나타날 것이다. 더불어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일반인의 그런 노력을 위한 시간 및 비용의 과다 지출은 균형점을 일탈한 것으로 보아 감면규정을 둘 수도 있다.[8]

---

6) 이에 대해서는 임규철, "교원정보 실명공개의 위법성 유무", 공법학연구 제11권 제3호, 2010.8.; 서울중앙지법 2010.3.26. 선고 2010카합789 판결.
7)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해서는 임규철, "정보화 사회에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연구", 헌법학연구 제8집 제3호, 2001.10.
8) 유럽연합이나 독일도 '최신의 기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적용은 사실상 판례에 위임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학설의 논란도 없다. 옥션의 1심 판결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효용성이 입증되지 않은 일정 수준의 보안기술을 사용했다고 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예가 있을 뿐이다. 동 사례는 현재 2심 계류 중이지만 정보주체의 입장보다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입장을 강하게 대변했다는 생각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법익인 개인정보도 그 제한 또는 한계가 인정된다. 포괄적인 보호로 인해 도리어 그 제한 또는 한계는 더 넓어질 수 있다. 국내 헌법에서는 제37조 제2항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가 그 제한의 근거로 제시된다. 이는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정보주체의 동의, 법령의 규정, 계약 체결 및 이행, 생명 또는 신체 보호와 관련이 있지만, 정보주체나 법정대리인이 해당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정보 수집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나, 동법 제18조에 따라 목적 외의 정보 이용 또는 제공은 동의, 법령의 규정, 조약이나 국제협정, 범죄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목적, 법원의 업무 수행, 형(刑) 및 감호나 보호처분의 필요에 의해 가능하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특별규정으로 종교, 언론, 정당, 개인의 사적인 행위, 친목단체 운영 등의 영역은 개인정보 보호규정의 완전 배제 또는 일부 배제가 이뤄지고 있다. 특별영역 설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외가 원칙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적용배제 또는 완화영역에서 개인정보의 오남용으로 인한 권리침해가 지속적 또는 구조적으로 발생한다면 그러한 영역은 존재하지 않는 편이 옳을 것이다.

2. 개인정보의 가치

개인정보는 경합되는 상이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개인정보는 인격적 가치, 재산적 가치, 의사소통적 가치, 행정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 그 가치가 혼재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편향된 개인정보 관련 입법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비교형량을 통한 상대적 우위만이 제한적으로 인정될 뿐이다.

실제적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해석에 있어서 판례는 이런 경향을 지속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다만 지금은 활용에 치우쳤던 흐름과 균형을 잡기 위해 보호 쪽으로의 흐름이 강하게 존재한다. 이러한 흐름은 유럽연합으로부터 촉발되고 있다. 특히 객체로서의 집단에서 주체로서의 개인으로의 근대 시민혁명을 제대로 겪지 못한 국내에서 그런 흐름은 강하다. 권리보호가 없는 상태에서의 통제 및 행정목적의 달성만 위한 정보 처리는 인간의 수단화의 가능성 때문에 위헌 논란이 발생할 수가 있다.

개인정보에 대해 비록 정보주체는 희미한 인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개인정보처리자 입장에서는 특정 개인정보는 분명 뛰어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특정 영역인 '퍼블리시티권' 보호영역에서 특히 그렇다.[9]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 인터넷 기업들이 정보주체에게 무료로 많은 저장공간과 활용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정보주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 때문이다. 그 부가가치는 해당 특정 기술의 발전 및 활용에 따라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큰 확장이 가능하다. 포털이나 SNS업체가 DM 등의 수익을 얻기 위해 가능한 많은 개인정보의 처리를 발전전략으로 삼고 있는 점은 이를 입증하는 예이다. 이것의 무차별적인 확대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등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라든가, 동의가 없는 경우 불이익 공지 금지규정을 두거나 목적 외의 활용 금지, 열람권, 정정권, 처리 정지권, 삭제권 등의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

의사소통의 가치는 알권리의 확대와 일치하는 경향이 강하다. 인격적 가치의 강조는 대부분 개인정보의 활용의 제한으로 이어지는 반면 개인정보의 의사소통의 가치의 확대는 정보의 활용방향으로 상대적 우위를 보장하는 경향이 강하다. 두 개의 가치를 이율배반적인 것으로 뚜렷하게 구별할 필요는 없다.[10] 개인정

9) 퍼블리시티권은 '저명인의 초상 등이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힘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가 있다. 브로마이드 사진 및 그라비아 사진, 캐릭터 상품, 상품 광고에서 소비촉진을 위한 그 재산적 가치는 탁월하다. 이에 대해서는 문일환,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동아법학, 제55호, 2012, 343~371쪽.

10) 이의 반대되는 입장으로는 박경신, "사생활의 비밀의 절차적 보호규범으로서의 개인정보보호법리", 공법연구 제40집 제1호, 2011.10., 153~154쪽.

보의 속성 그 자체가 복합적이기 때문이다. 극단적인 의사소통의 가치만의 보호는 사회의 전체주의화를 불러오기 때문에 당연히 부정된다. 한계(비교형량)의 설정문제이다.

일반적으로 판례는 공적 인물의 정보에 대한 의사소통 가치는 일반인의 정보보다 넓게 인정하고 있다.[11] 문제는 의사소통을 하는 정보의 내용이 사적인 경우와 공적인 경우가 혼재되어 있을 때이다. 새로운 매체로 각광을 받고 있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및 메신저 등에서의 이런 혼재현상은 일반적이다. 이 영역은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송통신위원회법)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후 통제를 행하고 있다. 자의적인 행사가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어서 적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심의를 행하는 구성원의 다양성 보장과 더불어 법령상 명확한 기준설정이 필요한 영역이다.

Ⅳ. 개인정보보호법제

1. 전체적인 흐름

1980~90년대 초반에서는 개인정보의 침해는 주로 인격적 가치(보호)와 행정적 가치(활용)의 충돌로 발생한다고 보았다. 국가 우위 상황에서는 사실상 후자가 전자를 압도하는 경우이므로 정보주체의 권리보호는 명백한 규정의 위배되는 경우로 한정되면서 사실상의 권리침해에 대해서는 무방비였고 일부 국가 외에는 정보주체의 관심이 그리 컸었다고는 할 수 없었다.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라는 시대적 분위기의 영향도 무시할 수가 없었다. 동시에 1980년의 OECD의 개인정보보호원칙을 국가마다 활용방향으로 변형시켜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국내도 (구)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12]로서 개인정보를 보호했었지만 지금과 비교하면 그 보호영역이 컴퓨터로 행하여진 업무로 인한 침해로 한정이 되고, 비(非)컴퓨터 정보 처리의 민간영역에서는 법률의 규제가 사실상 없는 자율규제 형식이었다. 시혜적인 성격이 강한 법률이었다.

그 후의 민주주의 의식의 수직적인 함양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 방식을 현실세계의 정보 처리도 강제력이 구비된 규범으로 보호되는 포괄적인 것으로 변화되게 만들었다. 동시에 독일 및 프랑스를 필두로 국가들은 공공 및 민간을 통괄하면서 그 보호정도에 큰 차이가 없는 법률안을 제정 및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정보통신기기의 민간사용이 늘어나고 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무절제한 행위의 결과 민간기관에 의한 침해가 두드러져 그 보호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그 보호방식은 통합법 또는 개별법 등을 통한 보호 등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한국이나 일본 또는 유럽연합(95/46/EU)은 민간 및 공공의 구별 없이 단일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

11) 이부하, "공인의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 서울법학, 제20권 제1호, 2012, 43~77쪽; 대법원 2012.8.23. 선고 2011다40373 판결(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경우에 그 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보도가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보도가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 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 해당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 · 사회적인 의미가 있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12)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대체 폐지.

2. 관련 법제 일괄(법률 중심)

연번	소관 부처	법령	주요내용
1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법	• 공공 및 민간 대상 • 개인정보 처리 기준 및 보호조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 공공기관 대상 • 개인정보의 관리적 · 기술적 보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2조)	• 공공기관 대상 • 개인정보의 비공개
		주민등록법(제30조 등)	• 행정기관 및 행정업무 위탁기관 • 민원인의 신상정보 누설 금지
		전자정부법(제4조)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대상 • 주민등록정보의 처리 및 보호
		전자서명법(제24조)	• 행정기관 대상 •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원칙 명시
		공직자윤리법(제13조 등)	• 행정기관 대상 • 공직자재산등록정보의 보호
2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 통신사업자 대상 • 개인정보의 관리적 · 기술적 보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등)	• 통신사업자 등 위치정보 사업자 대상 • 개인 위치정보의 비밀 보호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제15조)	• 인터넷주소관리기관 등 대상 • 인터넷주소 사용자 정보의 보호
3	금융위원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6조 등)	• 금융기관, 신용평가기관 등 대상 • 신용정보 제공 · 활용 및 보호조치
		보험업법(제177조)	• 보험사업자 대상 • 개인정보의 누설 · 제공 금지
		은행법(제21조의1)	• 금융기관의 임원 및 직원 대상 • 정보누설 · 목적 외 이용 금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 금융기관 대상 • 거래정보의 활용 및 보호
4	보건복지부	의료법(제21조의1)	• 병 · 의원 등 의료기관 대상 • 환자의 진료내역, 병력 등의 정보보호
		건강검진기본법(제18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상 • 검진자료의 활용 및 보호
		장기이식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 장기이식관리기관 등 대상 • 장기 이식자 등의 비밀 보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35조)	• 건강검진기관 대상 • 유전정보 등의 보호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 조직병원 등 대상 • 조직기증자 정보 보호
5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기본법	• 교육관련 기관 등 대상 • 학생 신상정보 및 생활기록 정보보호
		초중등교육법	• 초 · 중 · 고등학교 대상 • 학생관련 자료제공의 제한
6	법무부	통신비밀보호법	• 통신사업자 및 통신망관리자 대상 • 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정보 보호
		출입국관리법	• 출입국관리업무 담당 대상 • 출입관리정보의 보호
7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기본법	• 국가 · 지방자치단체 등 대상 •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 명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 전자상거래 이용 기업 대상 • 소비자의 정보이용 등 보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48조)	• 방문판매 사업자 대상 • 소비자 정보의 오 · 남용 및 도용방지
8	기획재정부	관세법(제116조)	• 세관공무원 대상 • 관세정보의 보호 및 이용
		관세사법(제14조)	• 관세사, 직무보조자 대상 • 업무상 비밀 유지

9	지식경제부	전자거래기본법(제12조)	• 전자상거래 이용자 대상 •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명시
10	외교통상부	여권법(제18조)	• 국가(외교통상부) 대상 •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
11	국토해양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9조)	• 중개업자 및 공인중개사 대상 • 업무상 비밀준수
		자동차관리법(제69조)	• 국가(국토해양부) 대상 • 자동차소유자 사생활 비밀 보호
12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법(제28조)	• 노동위원회의 위원, 직원 대상 • 업무상 비밀준수
13	국세청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 국세청, 세무서 등 대상 • 기업 및 개인 등 납세자 정보 보호
14	통계청	통계법(제33조 등)	• 중앙, 지방자치단체 대상 • 통계작성 등 위한 개인정보 보호
15	경찰청	경찰관직무집행법(제2조 등)	• 경찰공무원 대상 • 치안정보의 수집 · 작성 및 배포
16	병무청	병역법(제80조 등)	• 병역담당 기관 및 공무원 등 대상 • 병역정보의 수집 · 이용 등
17	감사원	감사원법(제27조)	• 감사원 대상 • 감사자료의 목적 외 사용 금지[13]

3.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법제의 일반법이다. 개인정보처리자, 태아, 망자, 법인, 공개정보의 처리, 적용배제 영역 등 많은 논란이 있다.[14] 이 중 개인정보처리자와 적용배제 영역에 한정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가. 개인정보처리자

1) 일반론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은 '개인정보처리자'이다. 즉,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의 처리만이 그 적용대상이다. 동법 제2조 제5호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사업자 및 개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15] 개인정보처리자의 개념인 '단체, 사업자 및 개인 등'[16]이라는 규정 덕택에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 및 민간부문에 총괄적으로 적용되는 일반법 기능을 한다. 따라서 동법은 주식회사와 같은 영리목적의 기업 및 동호회나 동창회 등의 친목단체, 1인 사업자의 정보 처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17]

개인정보처리자라는 개념은 '개인정보파일', '업무'라는 이중적인 제한을 받고 있다. 입법기술상 드문 예이다.[18] OECD의 관련 법제에서는 국내의 개인정보처리자를 '개인정보의 내용 및 이용에 대해 결정을 갖는 자'(data controller)로 정의하고 있고,[19] 유럽연합의 관련 준칙(Directive/Richtlinie)도 국내의 '처리' 개념과 유사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20] 실

13) 더 자세한 법령은 행정안전부/한국정보화진흥원(NIA), 「2012 개인정보보호 법령집」 참조.
14) 이에 대해서는 임규철, "개인정보의 보호범위", 한독법학 제17호, 2012, 227~241쪽 참조.
15) 사업자에 대한 근로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권오성, "근로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소고", 홍익법학 제12권 제3호, 2011, 171~187쪽.
16) '등'의 개념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자의 적용범위를 포괄적으로 하여 정보의 주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여지는 있으나, 이는 행정편의적인 자의적인 운영을 불러올 수가 있는 오해를 피하면서 명확성의 원칙을 강화한다는 입장에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등'을 이용하는 입법기술은 일본을 제외한 외국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든 입법기술이다.
17)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법 해설서」, 2011.12., 19쪽.
18) 개인정보처리자의 개념에 있어 그 제한의 규정의 의미를 개인정보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면서 규제의 합목적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노력의 산물이라고 보는 입장도 있다(이창범, 「개인정보보호법」, 법문사, 2012, 32쪽).
19) Guideline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 of 1980 Chapter 1 Art. 1 (a).
20) Richtlinie 95/46/EU Art. 2 d).

효성 확보목적이 크다고 하지만 개인정보의 포괄적 보호가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면서[21] 불명확하고 유동성이 큰 전제조건을 2개나 설정한 입법태도는 옳다고 보기 힘들다. 비교법적으로 설정의 명확화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전제조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는 그 조건들이 입법이 아닌 판례와 학설에 좌우되게 하는 것은 법률실무가에는 자의적인 해석의 가능성을, 동시에 정보시장에는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2) 개인정보파일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는 개인정보'만을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보 처리의 범위에 속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다. 해당 용어의 뿌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이다.[22]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4호는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쉬운 검색성 · 체계성 · 집합성의 세 가지를 그 구성요소로 삼고 있다. 이런 요소들은 특정 개인에 대한 식별가능성을 정보사회에 맞게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디지털화된 고객 DB 및 대학 출석부 등이 대표적이다.

파일은 국어사전에 따르면 다의적인 명사로서 '서류철'(여러 가지 서류를 한데 모아 매어 두게 만든 도구) 또는 컴퓨터 용어로 '하나의 단위로서 처리되는 서로 관련 있는 레코드의 집합'을 말한다.[23] 즉, analog 및 digital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표준지침 제3조에서도 '수기문서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파일'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3가지의 구성요소를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analog 및 digital 형태의 모든 정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정보처리자 및 일반인의 기준에서 정보주체에 대한 식별가능성이 없거나 식별가능성을 확정하기 위해 합리성을 벗어난 모든 형태의 단편적인 개인정보까지 포함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의 사각지대는 줄어들겠지만, 규제의 현실성을 무시한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이다.[24] 즉, 쉬운 검색성 · 체계성 · 집합성이라는 요건충족이 된 수기문서와 달리 동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한 수기문서나 디지털 파일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이 배제된다.[25]

'일회성 초안 및 메모, 문서내용만을 기록하는 행위, 명함전달 등'의 단순사무처리가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파일에 속하는지 유무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명함전달의 문제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표준지침 제6조 제3항을 통해 '사회통념상 동의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의 동의 없는 수집 및 목적 내의 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구속력이 있는 법규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회성 초안 및 메모는 개인정보파일의 요건충족이 된 다른 on/off line의 서류철과 편재가 같이 되어 있다면 개인정보파일로 보는 것이 옳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동법의 적용은 힘들다.[26] on/off line의 단순문서 기록행위도 동일하다. 입법론적으로는 독일의 제46조 제2항처럼 초안 및 메모는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신설이 바람직하다.

---

21) 행정안전부, 앞의 해설서, 19쪽.

22)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대체폐지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는 개인정보파일을 '특정 개인의 신분을 식별할 수 있는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개인정보의 집합물로서 컴퓨터의 자기테이프 · 자기디스크 기타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과 유사한 규정이다. '식별가능성'과 '컴퓨터'의 용어를 삭제하면 동일한 용어의 정의이기 때문이다. '식별가능성'의 개념도 '개인정보파일'로 대체할 수 있다.

23)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40085000 (최종방문 2012.9.11.).

24) 이창범, 앞의 책, 29쪽; 행정안전위원장, 앞의 법안, 3쪽.

25) 행정안전부, 앞의 해설서, 17쪽.

26) 일회용으로 사용하고 폐기할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은 이창범, 앞의 글, 4쪽.

3) 업무

가) 일반론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인정요건으로 설정하고 있다. 즉, 자기 또는 타인의 구분 없이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만이 개인정보처리자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입법자료를 통해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는 형법상의 업무방해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나 업무상 횡령죄 등에 대한 판례의 '업무' 개념에서 차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27] 불명확하여 그 기준설정의 유동성을 판례에 많이 의존하는 처벌법규인 형사법적인 그 개념을 개인정보보호법에 그대로 이식한 것이다. 중간법적 성격을 띠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제에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나) 주된 · 부수적 업무, 영리 · 비영리 업무

대법원과 통설에서는 '업무'란 '사람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의미한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28] 즉, 업무 개념의 핵심적 요소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사회적 지위) 및 '계속성'이다. 이러한 업무에는 '주된 업무'를 포함하여 '부수적 업무'도 포함되고, 경제적 업무 외에 비경제적이거나 정신적 업무도 포함된다. 보수나 영리목적의 유무는 구분하지 않는다. 그러나 '취미나 오락' 등의 행위를 부수적 업무로 보아 업무에 포함된다고 보는 입장[29]도 있는 반면에 이는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수행하는 사무로 보기가 어렵고 그 지위에 기초한 부수적 업무로 보기도 힘들다는 입장도 있다.[30] 이에 대해 판례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업무' 개념에 형법처럼 주된 또는 부수적 업무의 구분은 필요가 없다고 본다. 부수적인 업무라도 식별가능성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라면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동일한 이유로 영리목적의 구분도 필요가 없다.

'취미나 오락 등의 행위'를 형법에서는 처벌법규인 업무에 속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가능하겠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그 행위로 인해 정보주체의 식별가능성이 존재한다면 그러한 행위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이며, 동법 제58조 제1항 제3호의 친목단체에 속할 수가 있다. 다만 자율규제 확장을 통한 사적 자치의 확대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의 해당 조항의 적용완화는 가능하다.

행정안전부의 해설서는 순수한 개인적인 활동이나 가사활동을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 제공은 업무목적이 아니기에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31] 결론적으로는 옳다고 본다. 다만 그 해결방법에 있어 이러한 활동은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정하되 순수 사적 영역인 것으로 보아 개인정보보호법상 일괄적으로 적용을 배제하는 유럽연합의 형식이 입법론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본다.[32]

---

27) 행정안전부, 앞의 해설서, 18쪽;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앞의 글, 35쪽.

28) 대법원 2007.6.14. 선고 2007도2178 판결; 2005.4.15. 선고 2004도8701 판결;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06, 296쪽; 정영일, 「형법각론」, 박영사, 2006, 168쪽; 오영근, 「형법각론」, 박영사, 2005, 231~232쪽; 김일수 · 서보학, 「형법각론」, 박영사, 2007, 209쪽;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9, 205쪽; 박상기,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방해'의 의미", 형사판례연구 2, 1994, 215쪽.

29) 임웅, 「형법각론」, 법문사, 2007, 204쪽.

30) 김일수 · 서보학, 앞의 책, 210쪽, 배종대, 앞의 책, 296쪽, 손동권, 앞의 책, 185쪽.

31) 이창범, 앞의 글, 4쪽; 앞의 책, 31쪽; 행정안전부, 앞의 해설서, 17~18쪽.

32) 지인들에게 결혼식이나 약혼식 등의 개인적이고 사적인 특정 모임을 알리기 위해 청첩장 또는 안내장 등을 돌리는 행위도 비영리적인 개인적이거나 사적인 목적의 행위로서 업무가 아니라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배제가 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현실적인 상황의 적극적 수용과 법 만능 억제 및 자제 및 사적 자치의 확장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배제가 된다고 이론구성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 또한 식별가능성이 충분한 정보 처리이기 때문이다.

다) 보호가치가 있는 업무

형법상의 '업무'는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이어야 한다. 따라서 사무나 활동 그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의 반사회성을 띤 행위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다.[33] 동시에 그 보호가치의 인정유무는 그 사무가 실제 평온한 상태에서 일정 기간 계속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사회적 생활의 기반을 이루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고 있다.[34]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보호할 가치가 없는 개인정보란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불법적이거나 반사회성을 띤 개인정보도 정보주체와의 관련성을 가진다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가 된다.[35] 다만 공익 등(알 권리 등) 특별한 목적을 위해 그 배제 등을 포함한 활용의 제한의 강도가 강할 뿐이다. 언론보도 영역에서 종종 사회적 문제가 되곤 한다.

라) 일시적 또는 일회적 사무

일시적 또는 일회적 사무가 형법의 업무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주된 업무와 관련된 부수적 업무가 계속성을 띠고 있는 주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기만 하면 되는가 아니면 주된 업무와의 밀접불가분 외에 별도로 그 자체 계속성의 요건을 또 충족시켜야 되는가의 문제가 남는다. 이러한 문제는 부수적인 업무로 일시적 또는 일회적인 사무가 업무에 해당될 것인가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대법원은 시간적이며 절차적으로 어느 정도의 계속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36]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일시적 또는 일회성 사무처리라도 하고자 하는 사무와 연관하여 정보주체에 대한 식별가능성과 밀접성 및 어느 정도의 계속성이 존재해야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계속성이 결여된 일회성 초안 및 메모 등의 개인정보성은 인정하기가 어렵다. 학설보다는 입법형식을 통해 배제하는 것이 옳을 수도 있다.

나. 적용배제

1) OECD 및 EU

OECD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배제의 영역설정에 있어 순수한 사적 목적이나 국가주권 · 국가안전보장 · 공공정책의 경우에 수집 최소화 또는 일반에게 공표하는 것을 목적에 맞게 처리하도록 하면서 각국의 상황에 맞게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의 예외를 둘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37]

유럽연합의 관련 준칙도 적용배제 또는 완화의 영역설정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순수한 개인적이고 가족적인 활동영역'에는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이 배제된다.[38] 또한 '언론과 예술 또는 문학적인 목적수행을 위한 활동이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된다면 위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배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 규정은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한 동의와 정보주체의 통지권의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동의 및 통지 불필요). 그 외의 열람권 · 이의제기권 · 정정권 등의 정보주체의 권리와 보안조치 · 법적인 도움을 받을 권리 · 제3국으로의 정보의 전송 등에는 적용배제가 되지 않

33) 대법원 2001.11.30. 선고 2001도2015 판결.
34) 김일수 · 서보학, 앞의 책, 210쪽; 대법원 1986.12.23. 선고 86도1372 판결.
35)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앞의 글, 13쪽
36) 대법원 2005.4.15. 선고 2004도8701 판결; 1992.2.11. 선고 91도1834 판결; 1989.9.12. 선고 88도1752 판결; 배종대, 앞의 책, 296쪽; 정영일, 앞의 책, 169쪽. – 이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김성천 · 김형준, 박영사, 「형법각론」, 2000, 265쪽; 박상기, 「형법각론」, 박영사, 2008, 205~206쪽; 변종필, "업무방해죄에서 업무의 개념과 범위 : 회사의 공장이전사무가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형사판례연구, 2008.6.30., 124쪽; 박종민,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 및 위력의 의미", 대법원판례해설 제56호, 대법원, 2005, 309쪽.
37) Guideline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 of 1980 Chapter 1 Art. 4.
38) Richtlinie 95/46/EU Art. 3 (2).

는다.[39] 더불어 국가의 안전보장, 공공의 질서, 범죄행위의 예방 · 수사 · 체포 · 추적이나 법령에 따른 직업상의 의무규정의 위반, 통화 · 재정 · 조세를 포함한 중요한 이익, 공공의 질서 · 범죄행위의 예방 · 수사 · 체포 · 추적이나 법령에 따른 직업상의 의무규정의 위반방지 목적 · 정보주체의 보호나 제3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통제 및 감시목적, 정보주체의 보호나 제3자의 권리보호, 학문과 통계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한정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부분적으로 적용배제가 될 수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40]

OECD 및 EU의 개인정보법제의 배제영역에 있어서 공통점은 순수한 사적 영역 외에서의 관련된 법의 배제라도 배제되는 영역의 관련 법규에 최소 수집 원칙 준수나 목적 범위 내에서의 처리를 요구하는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목적 외의 정보 처리는 금지되지만 법령 등에 따른 목적 외의 처리는 인정된다. 완전한 배제영역은 드믄 입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일본

특정 영역에 있어 일괄적인 배제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한국 법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 제50조 제1항은 방송기관 · 신문사 · 통신사 기타 보도기관이나 보도의 용도에 제공할 목적, 저술이나 저술의 용도에 제공할 목적, 대학 기타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혹은 단체 또는 그에 소속된 자의 학술연구의 용도에 제공할 목적, 종교단체의 종교활동의 목적, 정치단체의 정치활동의 목적의 경우 개인정보취급사업자(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 · 학문의 자유 · 종교의 자유, 정당의 활동의 자유라는 기본권과의 충돌 해법으로 동 규정이 규정된 것으로 이해된다. 저술 및 학문 영역을 제외하면 국내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유사하다.

사업목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5000명 이하의 개인정보 DB 보유자에 대해서는 제2조 제3항에 의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배제를 받는 개인정보취급사업자로 규정을 하고 있다. 사업의 활동은 영리사업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목적 하에 반복적으로 계속하여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동창회 등의 친목단체도 5000명을 넘으면 개인정보취급사업자가 된다. 그러나 대외적 사업용이 아니더라도 조직 내부에서 고용원 관리 등의 목적으로 파일을 구축하고 있는 경우 5000명 이상이면 개인정보취급사업자가 된다. 더불어 위탁 및 수탁의 관계는 5000명에 관계없이 규제대상이며, 의료기관 · 개호(돌봄)사업자의 경우 처리되는 수에 상관없이 후생노동성이 정한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에 구속된다.

3) 독일

독일의 개인정보보호법은 포괄적인 적용배제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해당법의 개별적인 규정을 통해 배제 또는 완화규정 적용형식을 취하고 있다.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 등의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면서 비밀준수의 의무가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수집목적에 따라 보유 중인 정보를 생산 및 이용할 수 있으며, 합법적인 목적변경에 따라 생산 및 이용이 가능하다.[41] 또한 학문연구 목적을 위해 동의 없이 수집 및 저장된 개인정보는 가능한 즉시 익명화를 해야 하며 그 익명화된 정보는 특별하게 보관되어야 한다. 정보주체가 동의했거나 시대의 사건에 대한 연구성과의 설명을 위해 필수적인 경우에만 공표될 수 있다.[42] 언론기관 역시 부분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39) Richtlinie 95/46/EU Art. 9.
40) Richtlinie 95/46/EU Art. 13.
41) BDSG § 39.
42) BDSG § 40.

또는 전자정보 및 통신서비스법(Telemediengesetz, TMG)[43]의 적용을 받으며 개인정보보호관이나 이해관계인의 반론권과 열람권 혹은 정정권 등의 정보주체의 권리와의 충동해결 규정을 두고 있다.[44] 다만 개인정보의 수집, 생산, 이용이 순수하게 개인적이거나 가족적인 영역이라면 사적 자치의 보장이라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45] 또한 개인정보처리자가 단지 이동목적으로 독일 내에 머무르는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적용배제가 된다.[46]

4) 국내

가) 일반론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를 통해 동법의 적용을 전부 또는 일부 배제한 영역은 통계법 영역 ·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정보분석 영역 ·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 영역 · 언론 · 종교 · 정당 영역과 동창회 · 동호회 등 친목도모를 위한 단체 등이다. 전자는 일괄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3장부터 제7장, 후자(동창회 · 동호회 등)는 동법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조항 제15조 ·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조항 제30조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임명조항 제31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위의 두 영역들에 있어 동법 제58조 제6항에서 최소한의 처리원칙, 안전한 관리를 위한 기술적이고 관리적인 보호조치, 그 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 처벌의 강제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약하다. 반면에 이러한 입법형식을 자율규제의 유도기능이라고 보는 입장도 있다.[47]

나) 언론 · 종교 · 정당 영역

국내의 개인정보보호법의 전부 또는 일부 배제 조항인 제58조는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 제50조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으로 추론된다.[48] 언론 · 종교 · 정당 영역에 있어 '해당 영역의 고유목적 범위 내'에서의 적극적인 자유의 보장을 위해 즉, 취재의 자유 및 알권리의 보장, 종교활동의 자유보장, 정당활동의 자유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한 자유의 보장을 위해 다른 권리의 일괄적 배제는 합리성을 가지기 힘들다. 보호의 정도에 있어 상대적인 우위를 가진 기본권일지라도 다른 기본권의 적극적인 일괄적인 배제형식은 그 설득력이 약하다. 독일은 제41조에서 언론의 비밀준수의무 기술적 및 관리적 조치, 관청의 신고의무 내용을 자체적으로 언론영역의 관련 법률에 규정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언론의 영역은 관련 언론중재 및 피해구조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등 다른 법에서 정보보호를 위해 예전부터 규제를 해왔으나, 종교 · 정당영역에서의 개인정보의 과다한 수집 및 이용이나 제공 등의 개인정보의 처리 및 안정성 미조치는 이미 도를 넘은지 오래다. 조화를 위해 그 제한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수행에 필요한 영역에서 탄력성, 즉 특정 조항의 적용의 완화를 규정하는 방식이 입법기술상으로도 더 타당하다.[49] 차선책으로, 규정에 따른 일괄적인 배제라고 하더라도 해석론적으로 해당 영역은 그 '고유목적'을 엄격히 해석하여 오남용을 막을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의 해설서처럼 언론기관의 교육 및 인물DB 사업이나 종교단체의 사회복지사업, 정당의 여성

43) TMG 제1조 제1항에서 언론법의 영역을 일괄적으로 배제하는 규정을 두면서 제3항 및 제4항에서는 '온라인 언론보도의 주의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판례에 의해 법적 구속력을 받는 언론 자율규제기관인 'Deutscher Presserat'의 'Pressekodex'(신문윤리선언문)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임규철, "독일 '전자정보 및 통신서비스법'", 공법학연구 제12권 제1호, 2011.2., 172~173쪽 참조.

44) BDSG § 41– § 42.

45) BDSG § 1 Abs. 3 S. 3.

46) BDSG § 1 Abs. 5.

47) 정혜영,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과 체계에 관한 분석", 공법학연구 제12권 제4호, 2011.11., 415쪽.

48)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앞의 글, 24쪽; 정혜영, 앞의 글, 421쪽.

49) 종교단체의 배제에 대해 부정적인 주장은 정혜영, 앞의 글, 421쪽.

정치인 육성사업, 종교선교 목적의 부수적인 활동으로 행할 수가 있는 교육사업 · 청소년운동 · 부정부패 방지시민운동 · 자원봉사활동 등은 고유목적을 벗어난다고 판단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는 것이 옳다.[50]

다) 친목단체

법령상 친목단체의 정의 규정은 없다.[51]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 제3항은 사적 모임의 성격이 강한 친목단체의 운영목적을 위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있어서 일부 조항의 배제형식을 취하고 있다. 즉, 동법의 '동호회, 동창회 등 친목도모'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임명에 있어서 동법은 적용배제가 된다. 그러나 영리 목적의 운영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된다. '등'에는 향우회나 종친회 또는 동창회 모임 등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친목도모 단체의 개인정보보호법의 부분적인 배제는 위의 언론 · 종교 · 정당영역의 배제의 문제와는 논의를 달리한다. '순수한 개인적인 사항이나 가족 또는 가사 등의 영역'은 법만능 배제 및 개인정보의 의사소통적 가치의 활성화 방향(사적 자치의 강화)에서 법을 통한 사회의 규제방식보다는 자율규제 형식이 바람직하기에 예시되어 있는 사적인 영역에까지 동법의 개입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그 때문에 유럽연합 및 독일의 법제에서도 이를 명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규범의 적용배제 형식을 취하고 있다. 문제는 그런 자율규제의 형식이 동호회 · 동창회 · 향우회 · 종친회 · 동창회 모임 등의 친목도모 단체에 그대로 적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이다.

친목도모 단체의 활동은 지인편지의 단순배달, 지인주소 목록의 단순기재 및 보존이나 이용 및 제공, 휴가, 여행, 오락, 약혼 및 결혼식 등[52]의 순수한 개인적인 사항이나 가족 또는 가사 등의 영역과는 다르다. 그 활동은 개인 및 단체의 사회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동문회 · 향우회 등의 친목단체 회원명단 등의 개인정보는 쉽게 유통될 가능성도 높다. 선거인단 제도와 관련하여 후보자를 포함한 정당원 또는 영리사업주는 선거인단의 개인정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 법령에 따른 친목단체라는 개념정의도 없는 상태에서 상당히 포괄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의 완화를 설정한 것은 사실상의 법의 사각지대 양성 및 개인정보 보호의식의 하향화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최소한 제58조 제3항의 개정을 통해 제15조의 수집조항은 묵시적 동의나 사회상규 등을 통해 친목단체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부동의의 경우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 단체의 구성원과의 시간적 계속성 요구 및 그 활동을 구분하여 배제 또는 완화를 설정할 필요도 있다.[53]

4. 정보통신망법

가. 일반법

정보통신망법 제5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여 동법의 적용영역에서는 정보통신망법이 일반법 기능을 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54] 다른 법률

50) 행정안전부, 앞의 해설서, 348~349쪽.
51) 표준지침 제2조 제4호는 친목단체를 "학교, 지역, 기업,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단위로 구성되는 것으로서 자원봉사, 취미, 정치, 종교 등 공통의 관심사나 목표를 가진 사람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종 동창회, 동호회, 향우회, 반상회 및 동아리 등의 모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2) 이에 대해서는 Taeger/Gabel, Kommentar zum BDSG, 2010, § 1 Rn. 30.
53) 정혜영, 앞의 글, 421쪽; 성낙인,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2008 입법평가보고서, 한국법제연구원, 2008, 756쪽.
54) 정보통신망법 제5조.

에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법률이 정보통신망법보다 우선한다. 위치정보법이나 신용정보법이나 금융실명제법이 그렇다.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된다.

나. 적용영역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적용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보호법과 달리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준용사업자와 그 이용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적용되는 관련 법제의 특별법이다. 동법 적용대상으로 한정하여 살펴보도록 한다.[55] 미래의 법제방향으로는 전기통신사업자 외의 모든 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옳다.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가) 규정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란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영리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정보제공자)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정보제공매개자)'를 말한다.

나) 종류

(1) 전기통신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8호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란 동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신고면제 포함)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56]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는 전기통신사업을 기간통신사업 · 별정통신사업 ·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즉, 전기통신사업자는 '허가 또는 등록권자인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 기간통신사업자 · 별정통신사업자 · 부가통신사업자'이다.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는 KT, SKT, LG+U, 온세텔레콤 등이 있다. '별정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 등을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거나 법령에서 정하는 것에 따라 구내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이동통신사 대리점 · 국제전화서비스 · 선불국제전화카드사 등의 재판매 사업자 등이 있다. '부가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를 임차하여 기간통신역무 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다. 호스팅서비스인 각종 웹 · 포털 · 블로그 · P2P 웹 등의 운영사업자, IPTV 콘텐츠제공자, 보안관리서비스나 도메인관리서비스, 전자지불서비스, 온라인 정보처리서비스, 소액결제대행업 등의 전자상거래서비스, 온라인 교육, entertainment, 디지털 음악(벨소리, 통화대기음 등), 디지털 출판물, 인터넷 광고 또는 인터넷 방송사업자 등이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사업자도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다.

(2) 정보제공자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정보제공자'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전기통신역무(서비스)를 이용하여 각종 정보를 게시 · 전송 · 대여 · 공유하는 등의 정보제공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57] 영리목적의 자체 상품을 판매하는 쇼핑몰을 포함한 많은 웹이 여기에 해당된다. 영리목

55) 이에 대해서는 임규철, 「개인정보와 법」, 보명(출), 2009, 107~109쪽을 발췌 및 확대하였다.

56) 동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전기통신역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동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이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57)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기에 '자체적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정보통신망법상의 정보제공자 및 정보제공매개자가 아니다. 즉, 도서산간벽지의 전기보급의 불안정 또는 미보급 등의 사유로 자체 발전기로 가동되는 지역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통한 이용 및 운영이 아니기에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된다고는 볼 수가 없다.

적의 '인터넷 신문' 등의 웹을 개설하여 광고게시 또는 미용, 관광, 영화, 뉴스 등의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정보제공자로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해당된다. 학술 · 종교 · 자선단체 등처럼 비영리단체가 순수하게 단체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웹 운영하는 경우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정보제공은 아니다. 따라서 그런 영역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영리기업이 공익을 목적으로 웹을 운영하는 경우는 그 반대이다. 단순한 community 웹은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정보제공매개자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정보제공매개자'란 정보를 제공하려는 자와 제공받으려는 자를 연결시켜 영리목적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자를 말한다. 상품의 중개역할을 하는 쇼핑몰 또는 경매 웹과 도서중개서비스 웹이나 대리업체 웹이나 google, yahoo, daum, naver 등 검색을 사업의 주요 영역으로 설정하고 있는 기업도 영리목적의 정보제공매개자이다. 인터넷 신문 등의 이력서나 만화 등의 정보제공의 매개행위도 여기에 속한다.

2) 준용사업자

동법에서 '준용사업자'란 다른 법률에서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준용하겠다는 자이다. '다른 법률에서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보호규정이 준용되는 자'로는 전자서명법이 적용되는 '공인인증기관'(법 제24조 제2항), 인터넷 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의 '인터넷 주소관리자'(법 제15조 제2항),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상거래인' 및 동법 제1조와 제2조 제2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전화권유판매업자 제외)가 있다.

3) 이용자와의 이용관계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준용사업자와 이용자(정보주체)간에 그 '이용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그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은 없다.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준용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이동통신사는 해당 통신서비스나 웹이 가입하여 당사의 정보제공서비스를 이용한다면 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면 '이용하는 자'(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란 과거 또는 현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자 외에 가까운 장래에 이용하게 될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자(신뢰관계 구축)를 포함하고 있다.[58]

V. 언론보도와 개인정보보호

1. 일반론

2012년의 고종석 사건, 2009년 경기 남서부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 조두순 사건, 김길태 사건, 1981년 윤 노파 살해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고숙종 사건 등 사회적 여파가 큰 사건에 있어 언론에 의한 제

58) 예를 들어 이동통신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 및 포털 웹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회원가입을 한 자와 같이 현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통신서비스를 이용하고자 영업점에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와 같이 곧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자도 이용관계에 포함된다. 그러나 학원사업자가 학원수강자로부터 온라인상에서의 접수 및 이용 관계의 설정의 경우 이는 개인정보의 이용관계에 해당하지만 그 해당 정보를 학원관계자가 개인 PC 등을 통해 직원들과 공유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정보 처리에 해당하지만 정보통신망법의 이용관계라고는 볼 수가 없다. 홈페이지가 없는 학원의 경우도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한 경우가 아니기에 이용관계에 있다고는 볼 수가 없다. 또한 호텔 등의 사업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해 고객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이용관계에 있다고 보지만 수집된 개인정보를 마케팅 등에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해당하지만 정보통신망법의 이용관계라고 볼 수가 없다.

3자 또는 피의자 및 피고인의 적극적 신상공개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 공개의 폭에 대한 논란이 항상 있어 왔다. 이는 알권리 및 범죄예방 등의 공익과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의 충돌이다. 물론 그 배경에는 알권리를 핑계로 한 언론의 과열경쟁 및 불명확한 규정(신문방송편집인협회의 '신문윤리강령' 및 경찰청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등), 인권 감수성의 저하 등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비판도 가능하다.

2. 적용 법제

가. 언론, 언론사, 언론보도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언론, 언론사, 언론보도'의 개념에 대한 규정이 없다. 언론중재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언론'을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 신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2호에서는 '언론사'를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제15호에서는 '언론보도'를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의한 보도"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21조 제1항의 언론의 자유는 '표현행위'의 보장[59]으로 보는 반면에 언론중재법은 매체 중심으로 언론 및 언론사 또는 언론보도를 구분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언론'은 언론매체, '언론사'는 이들 관련 매체를 발간하거나 또는 운영하는 사업자, '언론보도'는 사전에 규정된 언론매체를 이용한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를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언론중재법의 언론사 및 언론보도의 개념 정의의 핵심은 '언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개인 블로그나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는 언론중재법이 적용되지 않아 동법에 규정된 정정보도나 반론권 등의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가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 혹은 방송통신위원회법, 민법 등이 적용된다.

새로운 미디어 환경의 수렴이 안된 매체 중심으로 규정된 그 개념 외에 더 구체적으로는 아래의 관련 법률에서 '언론 및 언론사'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개념 정의를 하고 있다.[60] 사실상의 언론역할을 하고 있는 포털 등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인터넷신문으로 보지는 않지만 그 피해구제에 대해서는 언론중재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간행물의 종류〉

종 류	내 용
신문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신문으로서 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외국어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특수주간신문 등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시사 · 산업 · 과학 · 종교 · 교육 · 체육 등 전체 분야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보도 · 논평 · 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해 동일한 제호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
인터넷신문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가 규정한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시사 등에 관한 보도 · 논평 · 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해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 • 독자적인 기사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취재 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 • 지속적인 발행요건으로서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할 것
잡지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을 제외한 잡지 및 기타 간행물

59)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5, 543쪽.
60) 행정안전부, 앞의 해설서, 348~349쪽.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일간신문 · 주간신문 · 인터넷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월간잡지를 발행하는 자
2.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을 하는 법인으로 방송이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 · 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에게 전기통신설비로 송신하는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
3.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61]
4. 공직선거법 제8조의5 제1항이 규정한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시사 등에 관한 보도 · 논평 · 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 · 편집 · 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보도 ·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 · 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 · 관리하는 자

나.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의 문제로 한정해서 본다면, 언론보도가 종이매체를 통해 발생하고(비인터넷 신문) 그 보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관련되어 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은 언론의 고유영역에 있어서는 적용배제 형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그 고유영역 외의 경우만 동법이 적용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4호는 '언론이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집 · 이용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제3장부터 제7장까지의 적용배제를 규정하고 있다. 언론의 고유영역이라도 적용영역이 되는 제1장은 법률목적, 용어 정의, 보호원칙, 정보주체의 권리, 국가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로 구성되어 있고, 제2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호정책, 지침근거, 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즉, 제1장과 제2장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기능 외에는 선언규정 형식을 띠고 있어 고유목적인 언론영역에서는 사실상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배제가 된다.

언론영역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배제의 핵심은 '언론의 고유영역'에 속하는 언론의 행위로 한정이 된다는 것이다. 언론의 고유영역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 이론적으로 자체 내에서 또는 다른 규범을 통해 그 영역설정은 가능한데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설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후자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언론중재법에 비추어 보면 언론의 취재 또는 보도 등이 고유영역에 속하다는 것은 이의가 없다. '취재'는 언론이 보도 · 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기사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의미할 수가 있다. 표현의 자유의 적극적인 보장을 위해 포괄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기에 그 범위에 편집, 집필, 논평, 여론 등을 포함시키는 것이 옳다. '보도'는 언론이 취재를 통하여 얻어진 것을 신문, 잡지, 방송 또는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일반인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의미할 수가 있다. 따라서 언론기관의 인물 DB사업이나 교육사업 등은 언론의 고유목적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정보통신망법

인터넷신문의 경우에는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기에 정보제공자 또는 정보제공매개자로서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신분이기에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물리적, 보안적, 관리적 조치 및 개인정보취급방침 등의 보호정책 등이 실행돼야 한다. 특히 전교조 실명공개 사건에서처럼 그 보도가 위법행위로 판단된 경우, 즉 불법정보의 유통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44조의

61) 뉴스통신이라 함은 전파법에 따라 무선국의 허가를 받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외국의 뉴스통신사와 뉴스통신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외의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시사 등에 관한 보도 · 논평 및 여론 등의 전파를 목적으로 행하는 유무선을 포괄한 송수신 또는 이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이다.

3, 제44조의7이 각각 적용되어 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정보통신망법의 흠결의 경우에는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언론의 고유영역에서는 동법의 적용배제 규정 때문에 사실상 언론의 고유영역 외의 경우만 동법이 적용된다.

검사 및 사법경찰관의 경우 이름이나 나이 또는 얼굴공개 등의 신상공개에 대해 특별법인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대한 특례법 제8조의2[62]가 우선적으로 적용되지만, 언론보도의 경우 동법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피해구제 및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있어 언론중재법 등의 특별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규정과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등이 경합적으로 적용된다. 특히 자율규제 조항이 언론영역에서는 큰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다.

62)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